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
출연 승인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0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가 개정됨에 따라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2016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 : 30백만원
- 산정기준
 · 시군당 30백만~160백만 내에서 분야별 비중에 따른 배정
 · 성주군 총 비중이 도내 2%로 2016년도 총 배정액 1,400백만원 중 최소액 배정
○ 조성목표액 : 2016년 기준 도 전체 20억원 (2020년까지 100억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「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〈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〉
나. 예산조치 : 2016년 당초예산 편성(30,000천원)
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